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4. 2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4.13. 이필레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: 2020.4.13.
- 다. 상정일자: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4.2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흥민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(안 제2조 별표 1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필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면제 규정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재난의 형태와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고 지원대상 또한 특정업종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원의 근거규정 미비로 구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,
-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공용주차장 요금 면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인 주차장 운영수입의 감소로 공단의 경영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단에서는 대체수입원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참고사항

○ 공영 주차장 현황

계	노상주차장	노외주차장	시설주차장
24개소 1,978면	13개소 706면	3개소 146면	8개소 1,126면

○ 예상 수입금(전년도 5월 기준)

- 2019년 5월 수입 : 694,133,760원
- 2020년 5월 수입(시행 후) : 340,077,010원
- 전년대비 동월대비 총 51% 수입감소(1시간 무료시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 처음으로